

의안번호	제791호
의결 연월일	2021년 7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일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1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일  
발 의 자 : 서동학, 김기창, 박우양,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이상식

### 1. 제안이유

“지역건설근로자”의 개념을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비한 조문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로 용어 변경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8조의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안 제3조, 안 제6조의2, 안 제8조, 안 제15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 : 해당없음
- 다. 협 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도로과
- 라. 조례안 예고 : 해당없음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건설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증대하는데”를 “높이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용해야”를 “적용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의1 및 제8조의2를 각각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제8조의2(종전의 제8조의1)의 제목 “의1(지역건설근로자 고용)”을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건설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노동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 때”를 “소집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6조 중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지역건설근로자</u>”란 <u>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건설노동자</u>”란 <u>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건설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충청북도에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도의 책무) 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u>증대하는데</u> 노력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도지사는 <u>지역건설근로자</u>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높이는데</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지역건설노동자</u>----- ----- -----.</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략)</p> <p>② 지역건설산업체는 <u>지역건설근로자</u>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p>	<p>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역건설노동자</u>-----</p>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생략)

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① -----  
지역건설노동자-----  
-----  
-----.

② -----  
----- 지역건설노동자-----  
-----.

제8조의3 (현행 제8조의2와 같음)

제13조(임기) -----  
----- 한 차례만 -----  
----- . ----- 새로 위촉된  
위원-----  
-----.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집하려는  
경우-----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필요  
-----  
----- .

제16조(수당 등) -----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  
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충  
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  
례」-----  
-----.

## 관계법령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